

청주교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정	2013. 12. 31. 규칙 제1332호
1차 개정	2015. 10. 15. 규칙 제1394호
2차 개정	2015. 11. 03. 규칙 제1397호
전부 개정	2019. 08. 28. 규칙 제1490호
1차 개정	2019. 10. 14. 규칙 제1496호
2차 개정	2019. 11. 08. 규칙 제149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공무원법」 제24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2부터 12조의4까지, 「청주교육대학교 학칙」제8조에 따라 청주교육대학교의 총장후보자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총장후보자 선정 방법) ① 청주교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총장임용후보자는 「교육공무원법」 제24조제3항제2호(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 및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실시하는 직접·비밀 선거를 거쳐 선정한다.

② 총장임용후보자의 선거에 관하여 「위탁선거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주교육대학교 학칙」 및 그 밖의 다른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장임용추천위원회”란 「교육공무원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로서 본교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을 위하여 본교에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2. “총장임용후보자”란 이 규정에 따라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의해 선정된 2명의 후보자를 말한다.
3. “총장임용후보자선거”란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을 위하여 이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를 말한다.
4. “후보자”란 총장임용후보자선거(이하 “선거”라 한다)에 후보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5. “선거인”이란 선거에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를 말한다.
6. “교원”이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총장,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의 전임교수를 말한다.
7. “직원”이란 「고등교육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인 직원 및 조교,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대학회계직원 말한다(대학 내 모든 회계 무기계약 직원 포함).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한다.
8. “학생”이란 청주교육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생을 말한다.

9. “관할선관위”란 「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3 및 「위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본교의 선거 관리를 위탁받은 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10. “선거기간”이란 후보자등록신청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한다.
11. “선거운동”이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이 선거를 통해 총장임용후보자로 선정되거나 선정되게 하거나 선정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12. “선거운동기간”이란 후보자등록신청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의 전일까지를 말한다.
 - ② 선거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관할 선관위의 해석에 따른다.

제2장 추천위원회

제4조(기능)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선거의 관리(관할 선관위가 관장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2. 「위탁선거법」에 따른 관할 선관위와의 협의
3. 선거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
4. 합동연설회 및 공개토론회의 개최
5.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 및 공고
6. 그 밖에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구성 및 존속) ① 총장은 총장임기만료 180일 전까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교원 12인(여성위원 3명 이상)
2. 직원 3인(여성위원 1명 이상)
3. 학생 2인
4. 졸업생 1인
5. 외부인 1인(총장지명)

③ 제2항의 추천위원회 위원 중 정해진 기간에 추천되지 않을 경우 해당 추천대상 구성원 중에서 총장이 지명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될 수 없다.

1. 선거 공고일 현재 교무처장, 기획처장, 학생처장, 교육대학원장, 사무국장
2. 휴직자, 정직자, 국외파견자, 6개월 이상의 장기 출장(파견)자, 연구년 교수 또는 공로연수자
3. 징계절차 중이거나 징계 중인 교직원
4. 휴학생, 정학생, 국내외 교류수학(해외인턴십 포함) 중인 학생

⑤ 추천위원회는 총장이 위원장 및 위원을 임명한 날부터 구성된 것으로 보며, 차기 총장이 임명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⑥ 총장은 중립적인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규직원 약간명을 추천위원회에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임명) ① 총장은 그 임기만료 180일 전까지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총장이 사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총장직무대행자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장직무대행자는 이 규정에서 정한 총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 제7조(위원장 등)** ① 추천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 및 사무직원 약간명을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추천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추천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와 사무직원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추천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 제8조(회의 및 운영)** ①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이 규정에 달리 정한 경우 외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위원의 신분보장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이 규정에서 정한 위원이 될 자격을 상실한 경우 및 위원이 될 수 없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신체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4. 제13조제1항제2호의 추천인이 된 경우
 5. 위원 본인, 그 배우자(또는 배우자였던 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이 후보자가 된 경우
 6.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후 본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을 하였거나 「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2제1항부터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7. 그 밖에 불공정한 업무 수행 및 언행으로 논란을 야기한 경우
-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총장이 해임한다. 다만, 제3호·제6호·제7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한다.

- 제10조(위원의 보궐)** ① 위원이 해임 또는 사임 등으로 궐위 시 총장은 그 궐위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일 공고 후 궐위된 경우에는 그 궐위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그 5촌 이내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후보자가 된 경우에는 해당 후보자에 관하여 이 규정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② 추천위원회는 직권 또는 후보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 ③ 후보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울 때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기피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스스로 후보자에 관한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3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 제12조(선거권)** ① 선거일 공고일 현재 본교에 소속된 교원으로서 휴직이나 정직 중이 아닌 사

람(이하 “교원선거인”이라 한다)은 선거권을 가진다. <개정 2019.10.14.>

② 선거일 공고일 현재 본교에 소속된 직원 및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을 가진다. <개정 2019.10.14.>

1. 휴직·정직 중이 아닌 직원(이하 “직원선거인”이라 한다)
2. 휴학, 정학 중이 아닌 학생(이하 “학생선거인”이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선거인에 대한 투표에 따라 적용되는 반영비율은 교원 80%, 직원 13%, 학생 7%로 한다.

제13조(피선거권) ① 다음 제1호와 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서 제3호를 충족하는 사람은 피선거권이 있다.

1. 본교총장 임기개시일 현재 본교 교원인 교수 또는 부교수. 단, 전·현직 총장 이력자는 제외한다.

2. 선거공고일 현재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교원선거인 중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외부인사

3. 후보자 등록 당시의 총장 임기만료 다음 날부터 4년 이내에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 단서에 의한 정년에 달하지 아니하는 사람. 다만, 이 규정 제16조제1항제2호 궐위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 후보자 등록일 다음 날부터 4년 이내에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 단서에 의한 정년에 달하지 않는 자<개정 2019.10.14.>

② 선거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

1. 「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2를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 표절·중복게재, 부당 저자 표시 등 연구 및 연구비부정행위를 범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징계처분을 받고 그 말소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성희롱·성폭행 등 성 관련 범죄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제14조(선거 후보자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가진 사람이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총장임기만료일전 180일까지 그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1. 교무처장
2. 기획처장
3. 학생처장
4. 교육대학원장

제4장 선거기간 및 후보자등록

제15조(선거관리의 위탁) 관할선관위에 대한 선거관리의 위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한다.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임기만료일 전 180일까지
2. 궐위선거 또는 재선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제16조(선거일 등의 협의) ① 관할선관위는 추천위원회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기간에

속한 날을 선거일로 정한다.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임기만료일 전 120일부터 60일까지

2. 궐위선거 또는 재선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② 선거기간, 선거인명부 작성기간·확정일 및 그 열람기간, 투표방법, 투표소의 설치 수, 설치장소, 투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은 관할선관위가 추천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③ 선거기간은 14일 이상 16일 이하로 하되, 관할선관위가 추천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17조(선거 공고) 선거 공고는 관할선관위가 선거인명부작성 개시일 전일에 하되 관할선관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공고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천위원회와 협의한다.

1. 선거명

2. 선거일

3. 후보자 등록기간 및 장소

4. 투표 개시시각 및 종료시각

5. 투표소·개표소의 명칭 및 소재지

6. 그 밖에 선거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선거인명부의 작성·확정·열람) ① 추천위원회는 관할선관위와 협의하여 정한 기간 및 기일에 선거일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선거권이 있는 사람을 조사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확정하여야 한다.

② 선거인명부는 교원·직원·학생선거인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이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등본 1통(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관할선관위에 송부하여야 하며, 선거인 명부를 확정하였을 때에는 그 선거인 명부 등본 1통을 지체 없이 관할선관위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추천위원회는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작성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인명부확정일의 전일까지의 기간 중에 열람기간을 정하여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까지 그 기간 및 장소를 학내에 공지하여야 한다.

④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면 열람 기간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추천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추천위원회는 제4항의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이를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고 관할선관위·이의신청자·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추천위원회 존속기간까지 추천위원회는 후보자가 선거인명부 사본의 교부를 신청한 때에는 그 사본 1통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후보자 등록 등) 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위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후보자등록기간(선거기간 개시일 전 2일부터 2일 동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관할선관위에 제출하여 후보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후보자등록신청서

2. 교수 또는 부교수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3. 제13조제1항제2호의 추천서(해당자에 한함)

4. 제14조제1항의 보직사퇴서(해당자에 한함)

② 관할선관위가 후보자등록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후보자는 지체 없이 관할선관위가 발행한

접수증과 제1항 각 호의 후보자등록신청 서류의 사본 각 1부를 추천위원회에 제출하여 후보자등록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후보자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2일 이내에 추천위원회가 정한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천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공정행위 서약서
3. 공약준수 서약서
4. 대학발전계획서

④ 추천위원회는 제3항 각 호의 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추천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와 방법에 따라 게시할 수 있다.

⑤ 후보자가 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정해진 기간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추천위원회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선거홈페이지”라 한다)에 공지한다.

⑥ 후보자는 자신이 직접 관할선관위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고함으로써 후보를 사퇴할 수 있다.

⑦ 이 규정에 따른 외부인사로서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선거권자가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무인은 허용하지 아니한다)한 추천장을 후보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⑧ 후보자의 등록 마감 결과 등록된 후보자가 없는 경우 추천위원회는 관할선관위와 선거일정 등을 다시 협의하여 결정한다. <2019. 10. 14. 개정>, <2019.11.8. 개정>

제5장 선거운동

제20조(선거운동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② 선거운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선거 홈페이지 이용
2. 공개토론회
3. 전화(문자 포함)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지지 호소
4. 선거벽보의 부착
5. 소형인쇄물의 배부
6. 선거공보 배부

③ 교원선거인은 선거운동기간 중에 이 규정 제28조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0.14.>

④ 후보자와 교원선거인이 아닌 사람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⑤ 제5장의 각 조에서 “선거인”이란, 특별히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 선거기간 개시일에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사람(선거기간 개시일에 선거인명부가 아직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21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총장임용후보자로 선정되게 하거나 선정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선거인에게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公私)의 직위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2.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에게 사퇴를 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제1호에 규정된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위를 제공받거나 그 제공 의사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 ②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을 호별(연구실을 포함한다) 방문하거나 방문하게 하는 행위 또는 선거인을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거나 모이게 하도록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③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및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공연하게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서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22조(선거공보) ①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공보 1종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는 추천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후 선거인명부 확정일의 전일까지 추천위원회가 정하는 수량의 선거공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선거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성명, 기호 및 사진
2. 학력 및 주요 경력
3. 주요 연구업적 목록
4. 대학의 발전방향 및 주요공약

③ 추천위원회는 선거공보를 확인할 때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고 증빙서류와 대조하여 이상이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상이 있는 경우 후보자에게 그 사항을 통보하고 추천위원회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선거공보를 수정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후보자가 제1항 후단에서 정한 기한까지 선거공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규격에 넘는 선거공보를 제출한 때에는 그 선거공보는 발송하지 아니한다.

⑤ 제출된 선거공보의 내용은 정정 또는 철회할 수 없다. 다만, 오기 또는 「위탁선거법」이나 이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이 기재되었을 경우 후보자는 추천위원회에 서면으로 정정신청을 하고 제출마감일까지 해당 후보자가 정정할 수 있다.

⑥ 선거인 또는 후보자는 선거공보의 내용 중 제2항제2호·제3호의 사항이 거짓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추천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이의신청자 및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후보자에게 그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증명자료의 제출이 없거나 거짓 사실임이 판명된 때에는 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선관위와 협의하여 관할선관위가 공고하고, 그 공고문 사본 1매를 선거일에 본교의 주된 게시판 또는 투표소 입구에 붙일 수 있다.

⑦ 선거공보의 규격·면수·작성수량·제출수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⑧ 추천위원회는 후보자가 추천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제출한 선거공보를 선거인명부 확정일 후 2일까지 선거인에게 발송한다. 필요한 경우 관할선관위와 협의하여 관할선관위가 발송하는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를 함께 발송할 수 있다.

제23조(공개토론회) ① 추천위원회는 선거운동기간 중 공개토론회를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 ② 후보자는 공개토론회의 참석을 거부할 수 없으며 공개토론회의 일정 협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③ 공개토론회를 개최하는 경우 추천위원회는 공개토론회의 실황을 중계하거나 사후에 공개토론회의 동영상을 게시할 수 있다.
- ④ 공개토론회의 개최·진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추천위원회가 정한다.

제24조(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①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다만,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전화를 이용하여 송화자·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법
-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

- ② 후보자의 제1항제1호의 방법은 선거인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 ③ 후보자는 제1항제1호·제2호의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경우 그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통화 또는 수신 거부 의사 표시를 밝힌 때에는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특히 제1항제2호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때에는 수신자가 수신 거부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리는 내용을 문자메시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5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지지 호소) ①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 1. 제2항에 따라 총장이 개설·운영하는 선거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화상·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
-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
- ② 총장은 제1항제1호의 방법에 의한 선거운동의 편의, 선거에 관한 각종 정보의 제공, 후보자의 자질·정책검증 및 토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학내 정보통신망에 선거를 위한 선거홈페이지를 개설·운영하여야 한다.
- ③ 추천위원회는 후보자가 이 규정에 따라 추천위원회에 제출한 서류 또는 선거공보를 기초로 후보자의 경력·자질·정책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선거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 ④ 선거인 또는 후보자는 선거홈페이지에 게시된 후보자에 관한 정보, 후보자가 게시한 글·화상·동영상 등에 거짓 사실이 있음을 이유로 추천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이의신청자 및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후보자에게 그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증명자료의 제출이 없거나 거짓 사실임이 판명된 때에는 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사실을 선거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 ⑤ 선거홈페이지의 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26조(선거벽보) ①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벽보 1종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는 선거인명부 확정일의 전일까지 추천위원회에 선거벽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선거벽보를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본교의 주된 건물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③ 선거벽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 선거공보와 관련된 내용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공보"는 "선거벽보"로, "규격에 넘는다"는 "규격을 넘거나 미달하는"것으로 본다.
- ④ 선거벽보의 작성 내용, 규격, 수량,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27조(소형인쇄물 배부 방법)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인을 대상으로 소형인쇄물을 배부할

때에는 우편(대학우편함 이용 방법을 포함한다)으로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4.>

제28조(교원선거인의 지지 호소 등) ① 교원선거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1. 전화·문자메시지,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것
2. 선거홈페이지에 글·화상·동영상을 게시하는 방법

② 교원선거인이 전화·문자메시지의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경우 그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통화 또는 수신 거부 의사 표시를 밝힌 때에는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특히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때에는 수신자가 수신 거부 의사 표시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리는 내용을 문자메시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본교의 구성원(선거인에 한정하지 아니한다)은 누구든지 제20조제1항제1호의 범위에서 선거홈페이지에 의견을 개진하거나 후보자의 정책에 대하여 질의하는 글을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0.14.>

제29조(후보자의 부정행위 제재) ①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규정상의 정책홍보 방법 외의 방법으로 자신이나 타인이 총장임용후보자가 되어야 하거나, 되지 않아야 함을 청탁, 강요 또는 설득 등을 하는 행위
2. 총장임용후보자가 될 목적으로 행하는 일체의 금전·물품·향응 등의 제공
3. 허위 사실의 유포 및 상대 후보자에 대한 비방
4. 추천위원회 위원 및 소속 교직원에게 보직 또는 인사상 이익 등을 약속하는 행위
5. 그 밖에 총장임용후보자의 공정한 선정 과정을 저해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추천위원회는 경고, 시정 명령 또는 자격 박탈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0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금지 등) ① 총장 및 제14조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의 기획 또는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정한 사람은 그 소속·담당하는 기관·부서·실·팀 등에 속한 교원·직원·학생 등의 선거인에게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와 관련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규정 제3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또는 선호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위반행위감시 등) ① 누구든지 선거의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위반행위 등”이라 한다)가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추천위원회 또는 관할선관위에 이를 신고할 수 있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반행위 등을 발견하였거나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관할선관위에 신고하고 필요한 조사와 조치를 요청한다.

③ 추천위원회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였던 사람이 선거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관할선관위에 의해 형사고발이 된 때에는 총장에게 징계절차의 개시를 요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총장은 징계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제6장 투표 및 총장임용후보자선정절차

제32조(투표·개표사무의 관리) ① 투표·개표에 관한 사무는 「위탁선거법」에 따라 관할선관위가 관리하되, 추천위원회는 그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선관위와 협의한다.

②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추천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선거 사무의 관리집행상의 하자 또는 투표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관할선관위의 바로 위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제33조(투표방법) ① 선거는 기표(전자적인 방법에 의한 표시도 포함 한다.)에 의한 투표로 한다.

② 투표는 선거인이 직접·비밀의 방법으로 한다.

③ 선거인은 투표할 때 그 성명, 그밖에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34조(투표·개표의 참관) 투·개표 참관에 대해서는 추천위원회와 관할선관위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35조(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방법) ① 총장임용후보자는 선거인의 투표에서 환산득표율의 과반을 득표한 후보자와 차순위 득표를 한 후보자로 하며, 그 선정 순위는 득표 순위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투표(제1차투표)에서 환산 득표율의 과반을 얻은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득표 순위에 따른 2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실시하여 환산 득표율의 최다 득표자와 차순위 득표자를 총장임용후보자로 선정한다.

③ 총장임용후보자 및 그 선정 순위가 정해지는 득표 순위에서 득표 수가 같은 후보자가 여러 명이 있는 경우 직전 투표의 득표 순위에 따라 정하되, 자세한 방법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5조의2(단일입후보의 경우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방법) ① 입후보자가 1인일 경우 제12조에 따른 선거인의 찬반투표에서 환산득표율의 과반이 찬성하였을 경우 이를 제1순위 총장임용후보자로 한다. <2019.11.8.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제1순위 총장임용후보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제2순위 총장임용후보자는 교수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추천위원회가 선정한다. <2019.11.8. 신설>

③ 제1항에 따른 투표결과 찬성표의 환산득표율이 과반에 미달하여 제1순위 총장임용후보자가 없을 경우 추천위원회는 관할선관위와 협의하여 재선거를 실시한다. <2019.11.8. 신설>

제36조(선정결과 통보 및 추천) ① 추천위원회는 임용후보자 2명의 선정 종료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총장에게 통보하고 학내에 공고한다.

② 총장은 선정된 임용후보자 2명을 총장 임기만료일 30일전(총장이 임기 중에 사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총장임용후보자 추천자 2인 중 1순위 후보자가 교육부 인사위원회의 심의에서 부적격일 경우 추천위원회는 관할선관위와 협의하여 재선거를 실시한다. <2019.11.8. 개정>

제37조(선거일 변경) ① 천재지변, 그 밖에 추천위원회가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일에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선관위는 추천위원회와 협의하여 투표일 등을 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선거일 변경에 따른 선거운동 및 선거비용 등 선거사무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추천위원회가 관할선관위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38조(선정에 대한 이의제기) ① 후보자 또는 선거인은,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선정공고일의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이의제기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

1. 총장임용후보자로 선정된 자가 「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2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위탁선거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를 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2. 총장임용후보자로 선정된 자가 이 규정에 정한 선거운동방법을 위반하였음이 확인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추천위원회가 제2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학내에 공고한다.

제39조(연구윤리검증 및 선정취소) ① 추천위원회는 제36조제1항에 따른 선정공고 후 총장임용후보자 2명의 연구윤리 저촉 여부의 검증을 본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지체 없이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뢰를 받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청주교육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를 밟으며, 이 검증 절차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최종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진행되어야 한다.

③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검증을 종료한 때에는 그 검증결과를 추천위원회 및 총장에게 통보한다.

④ 제3항의 통보를 받은 추천위원회는 총장임용후보자의 연구윤리위반이 판명되었고 해당 연구윤리위반이 총장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윤리를 손상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을 취소한다.

⑤ 추천위원회가 제4항의 선정취소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학내에 공고하고, 검증결과를 포함하여 선정취소결정을 총장 및 총장임용후보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총장은 지체 없이 총장임용후보자의 추천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⑥ 연구윤리 검증 절차 및 기한에 관한 사항은 추천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제40(선정 무효·취소에 따른 재선정 등) ① 이 규정에 따라 선정된 제1순위 총장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위원회는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선정취소가 확정된 경우
2. 선거 후 또는 추천위원회의 선정 후에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

② 추천위원회가 선정무효 또는 선정취소의 결정을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를 한다.

1. 선정공고된 제1순위 후보자가 선정무효 또는 선정취소 된 경우에는 제2순위 후보자와 제3순위 후보자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를 득표한 다수득표자를 제1순위로, 차순위자를 제2순위로 하여 총장임용후보자를 선정한다.

2. 선정공고된 제2순위 후보자가 선정무효 또는 선정취소 된 경우에는 제3순위자를 제2순위로 하여 총장임용후보자를 선정한다.

3. 다만, 선정 무효 또는 선정 취소에 의하여 최종 총장임용후보자 2인을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와 관할선관위가 협의하여 재선거를 실시한다. <신설 2019.10.14.>

제7장 보칙

제41조(비용지급) 추천위원회 및 산하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외부위원에 한함)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2조(업무 협조) 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추천위원회가 해당 부서에

협조를 요청한 경우 해당 부서는 협력하여야 한다.

제43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추천위원회가 정한다.

부 칙 <제1490호, 2019. 8.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496호, 2019. 10.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498호, 2019. 11. 0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